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조정처장, 교학지원처장을 당연 직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4인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9.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및 팀장급 이상의 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원 포상·징계 대상자 심사 및 의결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 직원 선정시에는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필요에 따라 위원 외에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